#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48 발의연월일: 2025. 3. 28.

발 의 자:신정훈·박정현·안규백

부승찬 • 위성곤 • 한민수

이해식 · 정을호 · 강준현

김성회 · 채현일 · 차지호

박지원・김 윤・김남근

박해철 • 허성무 • 김문수

허 영ㆍ이광희ㆍ이병진

오세희 • 윤준병 • 박용갑

정진욱 의원(25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이동하거나 재분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보호기간의 지정 권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할 경우 범죄 및 사건 등의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한 및 재분류 시기를 명확히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 임.

### 주요내용

- 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 나.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및 보호기간 지정 등을 기록물의 이관을 완료한 뒤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시행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 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관리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탄핵의 직접 적인 사유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은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 법률 제 호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은"을 "대통령(「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및 보호 기간 지정 등은 제1항에 따라 이관을 완료한 뒤 대통령기록관의 장 이 시행하여야 하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따로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탄핵의 직접적인 사유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기록물을 재분류하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등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 <u>대통령은</u> 다음 각 호의 어	① 대통령(「대한민국헌법」
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	제71조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
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	<u>행은 제외한다)은</u>
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사	
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	
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	
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u>.</u>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	제20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
령기록물 관리) ① (생 략)	령기록물 관리) ① (현행과 같
	<u>○</u> )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	②
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	
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대통령기	
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등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	<u>이 경우 제17조</u>

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이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 록물의 재분류 및 보호기간 지 정 등은 제1항에 따라 이관을 완료한 뒤 대통령기록관의 장 이 시행하여야 하며, 대통령기 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이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탄핵의 직접적인 사유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